



서울동부지방법원

판 결

사 건 2024고단2 [redacted] 사기
 2024초기 [redacted] 배상명령신청

피 고 인 김 [redacted] ([redacted]), 무직
 주거 서울 [redacted]
 (현재 서울 [redacted] 구치소 재소중)
 등록기준지 서울 [redacted]

검 사 민 [redacted] (기소), 이 [redacted] (공판)

변 호 인 변호사 [redacted] (국선)

배상 신청인 박 [redacted] [주소: 전주시 [redacted]]

판 결 선 고 2024. 11. [redacted]

주 문

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.
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박 [redacted] 에게 8,600만 원을 지급하라.
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이 유

범 죄 사 실



[범죄전력]

피고인은 2022. 10. []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3. 1. []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, 2023. 11. []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4. 1. []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.

[범죄사실]

피고인은 2015.경부터 [] 인 '주식회사 []'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, 피해자 박 [] 과는 중학교 동창 관계이고, 2019. 10.경 피해자 박 [] 으로부터 그 직장 동료인 피해자 유 [], 피해자 [] 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.

1. 피해자 박 [] 에 대한 범행



대한민국법원 QR코드

서울동부지방법원

제 1 - 2 형 사 부

판 결

정본입니다.

2025. 5. .

법원사무관 : .



사 건 2024노 . 사기

2025초기 배상명령신청

2025초기 배상명령신청

피 고 인 김 (),

주거 서울

등록기준지 서울

항 소 인 쌍방

검 사 민 (기소), 장 (공판)

변 호 인 변호사 김 (국선)

원심 배상신청인 박 [주소 :]

당심 배상신청인 1. 유 [주소 :]

2. [주소 :]

원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. 11. 선고 2024고단 판결 및

2024초기 배상명령신청

판 결 선 고 2025. 5. .

*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,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(번호)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,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
주 문

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당심 배상신청인 유 _____ 에게 3,380만 원, 당심 배상신청인 _____

에게 2,100만 원을 각 지급하라.

당심 배상신청인들의 각 나머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.

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이 유

1. 이 법원의 심판범위